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635호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구조개편 추진에 관한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기획평가과), 02-970-6066

제정 2017. 12. 7.

개정 2019. 12. 11.

개정 2021. 2.23.

학칙개정 2021. 10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과·학부의 통폐합,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, 전임교원의 소속 변경,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학사구조개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학사구조개편"이란 학과·학부 신설, 학과·학부 통폐합, 입학정원 조정, 전임교원 소속 변경을 말한다.
- 2. "학과·학부 신설"이란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」(이하'학칙'이라 한다.) 제30조에 따라 입학정원을 갖는 모집단위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. (학칙개정 2021. 10 .1.)
- 3. "학과·학부 통폐합"이란 학칙 제30조에 따른 모집단위의 통합 또는 폐지를 말한다. (학칙개정 2021. 10 .1.)
- 4. "입학정원 조정"이란 학칙 제30조에 따른 입학정원의 감축 또는 증원을 말한다. (학칙개정 2021. 10 .1.)

- 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학칙 제29조에 따른 학사학위과정 설치 학과·학부에 적용한다. (학칙개정 2021. 10 .1.)
- 제4조(학사구조개편추진위원회) 학과·학부 신설, 학과·학부 통폐합, 입학정원 조정 등 학사구조개편 추진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학사구조개편추진위원회(이하 '위원회')를 둔다.
- 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연구처장, 각 단과대학의 대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다만 학생정원이 없는 단과대학의 대학장은 제외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, 당연직을 제외한 그 밖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
 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 -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- 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- 1. 학과·학부의 신설에 관한 사항
 - 2. 학과·학부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
 - 3. 입학정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
 - 4. 그밖에 학사구조개편 추진과 관련된 사항
- 제7조(학사구조개편 기본원칙) 학사구조개편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대학 발전계획 및 대학 특화 계획 고려

- 2. 융 · 복합 및 사회 수요 변화 고려
- 3. 학과·학부 발전계획서 및 주요지표 고려
- 4. 대학 기본역량진단 등의 평가결과 고려

제8조(학사구조개편 추진기준) ① 입학정원 조정 등 학사구조개편 추진은 학과평가 결과를 활용한다.

- ② 학과평가 결과의 적용기준 및 학사구조개편 추진방법은 [별표1]과 같이 한다.
- ③ 학사구조개편 추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정원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1. 입학정원 자율 감축 등 자율적으로 학사구조개편을 추진한 학과·학부
 - 2. 편제정원이 완성되지 아니한 학과·학부. 다만, 단순 명칭 변경된 학과·학부는 조정 대상임
 - 3. 고유정원이 25명 이하인 학과·학부. 다만, 최초 1회에 한함.
 - 4.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과·학부 중 입학정원 조정이 불가 한 학과·학부
- ④ 학사구조개편으로 조정된 입학정원은 학사구조개편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학에서 관리한다.
 - 1. 정부의 입학정원 감축정책 이행에 활용
 - 2. 신설되는 학과·학부에 정원 활용
- 3. 대학 발전전략에 따라 입학정원 증원이 필요한 학과·학부에 활용 제9조(학사구조개편 절차) ① 학사구조개편 추진은 단과대학, 대학원 등

대학 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- ② 학사구조개편 추진은 위원회의 심의 및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전체교수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.
- 제10조(자율적인 학사구조개편 추진 지원) ① 학과·학부는 대학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및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학과·학부 입학정원 감축, 학과·학부 통폐합 등 자율적으로 학사구조개편을 추진할 수 있다.
- ② 학과·학부의 자율적인 입학정원 감축, 학과·학부 통폐합 등 학사구조 개편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.
- 제11조(학사구조개편에 따른 전임교원 소속 변경) ① 학사구조개편 대상 학과·학부의 전임교원은 신분과 소속변경을 보장한다.
 - ② 전임교원이 소속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원 소속 학과·학부 교원과 전환대상 소속 학과·학부 교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.
- 제12조(학사구조개편에 따른 학생의 지원) 학사구조개편 대상 학과·학부 재적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시행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제415호, 2017. 12. 7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 244호, 2019. 12. 1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583호, 2021. 2. 23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규정 제635호, 2021. 10. 1.) (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제8조(학사구조개편 추진기준)

1. 학과평가결과 적용기준

반영 연도별	학과평가 반영 비율	비고
정원조정연도 학과평가결과(Y)	50%	
1년전 학과평가결과(Y-1)	30%	
2년전 학과평가결과(Y-2)	20%	
계	100%	

2. 학사구조개편 추진방법

가. 정부의 입학정원 감축정책 결과에 따라 의무적인 학사구조개편이 필요한 경우

 \circ 학과정원 감축인원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: $R imes \left(rac{n_i}{N}
ight)^x imes d_i imes m$

- R : 총 감축목표 인원

- N : 총 고유정원, $N = \sum n_i$

- n_i : 학과별 고유정원

 $-d_i$: 학과평가 결과의 평가등급 적용비율

학과평가 종합순위(모집단위별)	등급	평가등급적용비율 (d_i)	비고
상위 1~5위 학과	1등급	80%	
6~11위 학과	2등급	90%	
12~17위 학과	3등급	100%	
18~23위 학과	4등급	110%	
24~29위 학과	5등급	120%	

- -x : 제곱값은 소규모 학과를 배려한 학과 정원별 가중치로서 x=1.1로 한다.
- -m: 조정상수로서 위 산출식의 결과가 총 감축목표인원(R)이 되게 하기 위한 값임
- 산출결과 값은 사사오입(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)하여 감축인원 결정
- 감축등급별 학과수는 대학 모집단위를 기준으로 균등하게 적용하되, 학과수 가 불균등할 경우 하위 감축등급 순부터 적용
- 정원감축 목표 초과인원 등 최종 입학정원 감축인원 관리는 대학에서 자율정원으로 흡수하여 관리

- [적용 예시]
- 1. 총 감축목표인원(R)을 124명으로 가정 (총 고유정원(N)은 1,912명).
- 2. 학과 고유정원이 $n_i = 100$ 명이고, 학과평가결과 등급이 3등급 $(d_i = 1.0)$ 인 경우,

$$R imes \left(rac{n_i}{N}
ight)^x imes d_i imes m =$$
 6.51이고, 사사오입 결과 7명 감축

- * 2017년도 학과평가 결과 적용 시 조정상수 값(m=1.349) 적용, 조정상수 값은 연도별 학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- 나. 대학 정책방향(미래의 교육수요 및 산업구조변화)에 따라 자율적인 학사구조개편이 필요한 경우
 - 참여학과(참여교수의 소속학과)의 입학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 유도하고, 학과평가 종합순위 하위학과의 입학정원을 감축조정하여 활용
 - 감축 목표인원 및 감축비율 등 세부사항은 학사구조개편위원회에서 정함